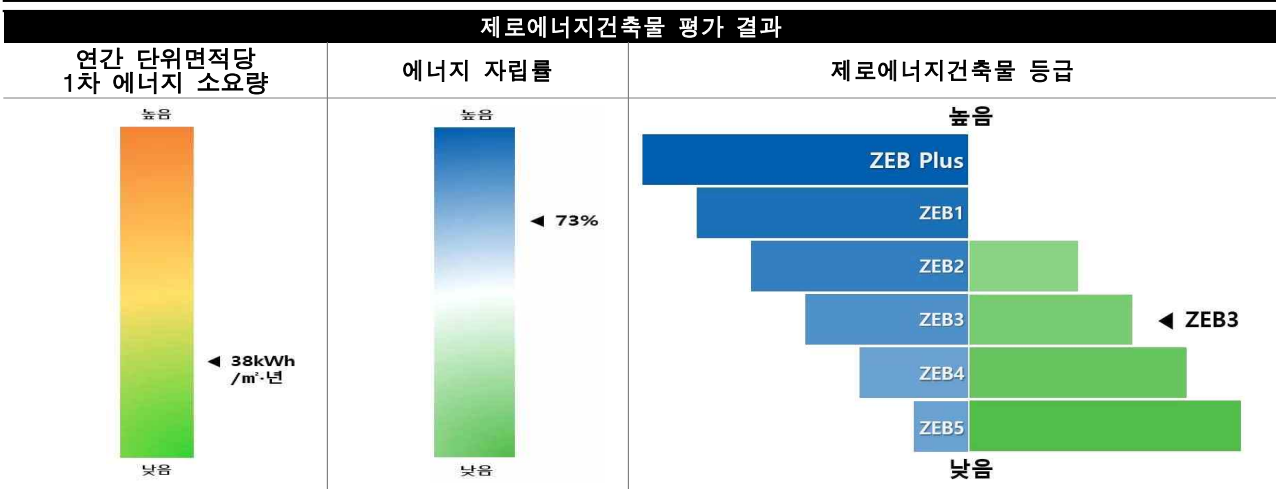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인증번호	:
준공연도	:	평가자	:
주 소	:	인증기관	:
층 수	:	운영기관	:
연 면 적	:	유효기간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건축물의 주된 용도	:	인증 등급	
설계자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 :	
건축물 대지 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주소	:	☐ 에너지 자립률(%) 합 계 : 대지 내 : 대지 외 : ☐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kWh/㎡·년) :	

※ 해당 인증결과는 국제규격에 따라 건축물의 냉방·난방·급탕·조명·환기에너지 성능을 정량 평가(Asset Rating)한 결과로 실제 사용 환경에 따른 에너지사용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유무 []

연간 단위면적당 에너지 소요량	건축물에 설치된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에너지 소요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에너지 자립률	1차 에너지 총소요량 대비 1차 에너지 순생산량에 대한 백분율

※ 상세한 인증기준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합니다.
※ 예비인증을 받아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예비인증 등급 이상의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예비인증 결과는 설계 변경 등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등급으로 결정되어 이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인증기관의 장

직인